

변경대비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칭	종류 (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어린이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코드: A3333)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3334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BP134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A3335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A3336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BO861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AP751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ED462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ED463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ED464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ED465

2. 주요 변경 내용:

① 투자설명서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위험등급 산정 기준 **97.5% VaR** 변경,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없음(**2등급 유지**)
-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 기업공시서식 반영(2024.03.01)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정

② 간이투자설명서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위험등급 산정 기준 **97.5% VaR** 변경,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없음(**2등급 유지**)
-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정

③ 신탁계약서

-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3. 변경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4. 변경시행일: **2024.07.18**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목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 부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 투자비용 -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운용전문 인력	아니오	업데이트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과세	아니오	개인연금 클 래스(C-P, C- Pe), 퇴직연 금 클래스(C- R, C-Re) 신 설	<신설>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 한 과세(종류 C-P, C-Pe 수익증 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 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 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 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 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 정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p> <p>(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종류 C-R, C-Re수익증권 가입자): 투 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 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 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 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아니오	개인연금 클 래스(C-P, C- Pe), 퇴직연 금 클래스(C- R, C-Re) 신 설	<신설>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20조 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 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신설>	C-P(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ED462 C-Pe(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ED463 C-R(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ED464 C-Re(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ED465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신설>	C-P(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ED46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 C-Pe(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ED463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회사의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 C-R(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ED464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C-Re(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ED46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전용 투자자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	<신설>	2024.07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R, C-Re) 신설		
4. 집합투자업자	아니오	사무실 이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5. 운용전문인력	아니오	업데이트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신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아니오	결산에 따른 97.5% VaR 변경, 기업공시서식 반영 (2024.03.01)	<변경 전 1>	<변경 후 1>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아니오	기업공시서식 반영 (2024.03.01)	<신설>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표 첨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	아니오	내부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원 및 의결사항 추가 등

무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신설>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아니오	업데이트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설	- <신설>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 보수: 0.2500 판매회사 보수: 0.7000 신탁업자 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80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 보수: 0.2500 판매회사 보수: 0.3600 신탁업자 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80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 보수: 0.2500 판매회사 보수: 0.7000 신탁업자 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80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 보수: 0.2500 판매회사 보수: 0.3600 신탁업자 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80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연금 클래스(C-R, C-Re) 신	<신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신설 1>

		설		(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C-R, 종류C-Re수익증권 가입자) <신설 2>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아니오	업데이트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아니오	사무실 이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아니오	업데이트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아니오	사명 변경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KB 펀드파트너스 -주석 추가: **2024년 6월 3일자로 KB펀드파트너스로 사명 변경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업데이트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변경 전 1>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총 6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 기준표]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23년 5월 18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하여 연환산 표준편차가 19.18%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참고 1: 표준편차 계산수식

$$\sigma = \sqrt{\frac{52}{156-1} \sum_{t=0}^{155} (r_t - \bar{r})^2} \quad \bar{r} = \frac{1}{156} \sum_{t=0}^{155} r_t$$

- * r_t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 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참고 2: 수익률 표준편차 비교 예시 (4주간 수익률)

구분	CASE 1	CASE 2
1주차 수익률	2.00%	4.00%
2주차 수익률	-1.00%	-3.00%
3주차 수익률	3.00%	6.00%
4주차 수익률	-4.00%	-7.00%
4주차까지 평균수익률	0.00%	0.00%
4주차까지 수익률 표준편차	3.16%	6.06%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투자기간 동안 펀드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변동이 컸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위의 예시는 4주간의 주간수익률이 CASE1 과 CASE2 처럼 나타날 경우 표준편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4주간의 평균 수익률은 0%로 동일하지만 표준편차는 CASE2 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투자기간 동안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얼마만큼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경 후 1>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총 6 등급 중 **2 등급(높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가 산정한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산정을 위해 산출한 **최근 결산일(2024년 5월 18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37.71%**
- 위험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97.5% 신뢰수준의 Value at Risk(VaR) 모형을 사용하며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을 곱하여 산출

<신설 1>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입니다.

<신설 2>

(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R, 종류 C-R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 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한 금액 중 연 900 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하되,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600 만원을 포함하여 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최대 900 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한도	연 600 만원 공제율: 13.2%	연 900 만원 공제율: 13.2%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		

※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 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

③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500 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목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 부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 투자비용 -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운용전문 인력	아니오	업데이트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과세	아니오	개인연금 클 래스(C-P, C- Pe), 퇴직연 금 클래스(C- R, C-Re) 신 설	<신설>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 한 과세(종류 C-P, C-Pe 수익증 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 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 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 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 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 정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p> <p>(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종류 C-R, C-Re수익증권 가입자): 투 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 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 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 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아니오	개인연금 클 래스(C-P, C- Pe), 퇴직연 금 클래스(C- R, C-Re) 신 설	<신설>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20조 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 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퇴직연금(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

항목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금융투자협 회코드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 연금 클래 스(C-R, C- Re) 신설	<신설>	종류C-P(ED462), 종류C-Pe(ED463), 종류C-R(ED464), 종류C-Re(ED465)
제1장 총칙 제3조(집합 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 칭 등)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 연금 클래 스(C-R, C- Re) 신설	<신설>	<p>7. 종류C-P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8. 종류C-P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p> <p>9. 종류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p> <p>10. 종류C-Re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p>
제2장 수익 증권 등 제10조(수 익증권의 발행 및 전 자등록)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 연금 클래 스(C-R, C- Re) 신설	<신설>	<p>7. 종류C-P 수익증권</p> <p>8. 종류C-Pe 수익증권</p> <p>9. 종류C-R 수익증권</p> <p>10. 종류C-Re 수익증권</p>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보 수)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 연금 클래 스(C-R, C- Re) 신설	<신설>	<p>7. 종류C-P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8. 종류C-P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9. 종류C-R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10. 종류C-R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제10장 보 칙 제52조(수 익증권의 통장거래)	아니오	개인연금 클래스(C-P, C-Pe), 퇴직 연금 클래 스(C-R, C- Re) 신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 자협회가 제정한 "수 익증권 저 축약관"에 따라 통장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 저축약관" (C-P, C-Pe, C-R, C-Re 클래스의 경우에 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아니오	-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7월 18 일부터 시행한다.